

「데이터베이스」 제작·운영에 있어서 「국가기밀」 보호문제

— 최근의 대법원판례('94. 5. 24.)를 중심으로 —

Safeguard of State Secrete Regarding to Database Production and Operation

신 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Shin, Kak-Chual/Ministry of Legislation, Leagislative Rearch officer.

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기밀보호]

앞으로 전세계가 정보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국제통신망체제가 구축되어 정보를 각국간에 서로 자유롭게 교환·이용하게 된다. 물론 국내법령에 의하여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금지조치는 국민들이 협조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 예컨대,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요정보의 국외유출금지 조항이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에 ①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중요정책에 관한 정보 ②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기술 또는 기기(機器)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국외유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지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보안법, 형법, 군사기밀보호법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개인정보의 경우도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국제유통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에도 그 양을 헤아릴 수 없는 대량의 정보들이 통신회선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국가 공권력이 체크하고 감시할 수 없다. 국가의 중요정보가 유출되어 사건화 되었을 때에는 이미 국가적손실을 크게 입은 다음이다.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등에 의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경우는 그 전파의 속도, 범위등이 상당히 한정적이

지만 정보통신매체의 경우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크다.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또는 도서초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운영할 경우에 특히 유의할 사항도 정보통신매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신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신문기사에서 이적표현물이나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수록·보도 되었다하여, 이를 어떠한 걸름장치(여과장치)없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로 제공했을때 어떠한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는 "이적표현물"이라 하여도 사실보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인용보도하게 된다. 또한 간행물등의 경우도 학문연구의 차원에서 논설로 발표하였을때 그 내용에 대하여 이적표현물로서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PC통신이나 그밖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전파할 경우는 새로운 차원에서 법적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PC통신에 "사노맹"이 간행물로서 발표한 이적표현물을 그대로 게재·전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94. 5. 11 한국일보 보도)

또한 이적표현물과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에서 매우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대법원 판결내용의 핵심을 보면 「국가기밀이라 함은 신문기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공지(公知)의 사항이라 하여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신문등에 의하여 공표되어 널리알려진 사실이라 하여도 이들 정보가 북한공산집단으로 흘러돌아가 유익한 정보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素材)를 선택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가. 국가기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최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제2부, 94. 5. 24 판결 94도 930)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함은 반국가 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 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신문기사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公知)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위의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서 매우 폭넓게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좀더 알기 쉽도록 나누어서 살펴보자 한다.

첫째, 국가이익을 해치는 정보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 지정된 모든 자료는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둘째, 국가의 모든분야가 기밀사항에 해당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국가기밀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국가기밀"을 국방비밀·외교비밀·첨단무기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등을 말한다.

즉, 누출될경우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기밀사항을 국가기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판결에서는 범위를 크게 넓혔다. 정치·경제·문화·사회등 모든 방면의 기밀사항이 국가기밀에 속한다.

예컨대, 정치인의 동정이나 주소·인적사항·정치성향등의 정보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제공하였거나, 대한민국의 중요경제정책, 문화·사회단체등의 동향과약 정보등을 상세하게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에게 이익을 주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쳤다면 국가기밀의 누출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지(公知)된 사항도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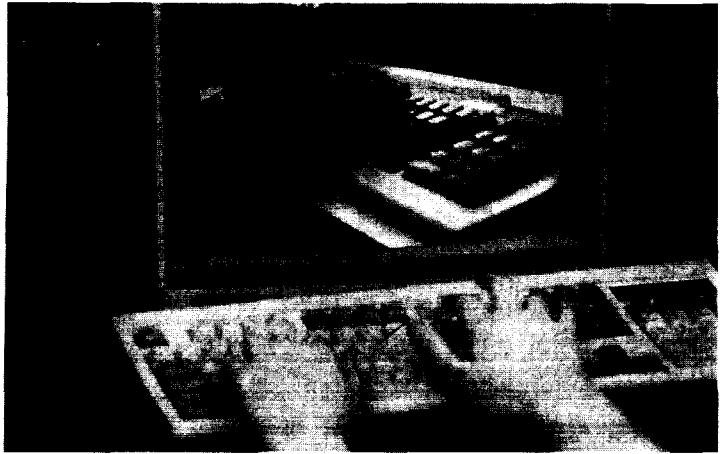
신문기사 또는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공지(公知)의 사항이라도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매우 포괄적인 해석이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정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미공표의 정보"를 말한다. 이미 공표되어 공공연하게 공지(公知)된 정보는 비밀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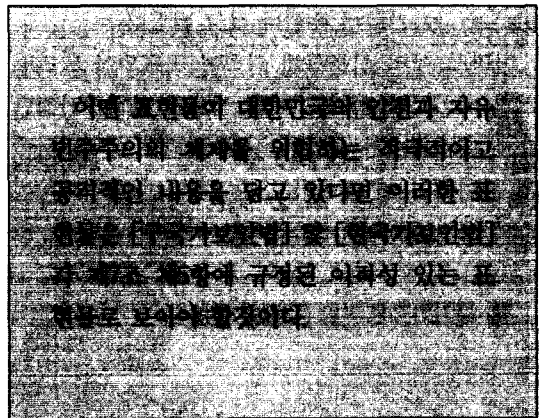
그러나 조건이 있다. 신문보도등으로 이미 공지된 정보라 하여도 이것이 반국가단체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국가기밀에 속한다. 따라서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판단되어야 할것이다. 즉, [국가기밀]에서는 통상적인 비밀의 요건으로 공지(公知)의 개념이 제외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의 정의

최근에 PC통신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이적표현물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실형(實刑)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94. 5. 24)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미화(美化)하거나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同調)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을 말한다.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화·찬양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게 해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모두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에 해당된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의 찬양·미화는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부정하는 내용은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에 해당된다.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의 경우도 앞에서 “국가기밀”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미 공표된 표현물 즉, 간행된 책자등에 수록되어 있다 하여도 데이터베이스등 정보통신매체에 게재하여 전송, 배포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거니와 다른 책자에 소개된 사노맹의 주장(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을 데이콤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수록하여 전파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다른 책자에 공표되었을 경우에도 함부로 데이터베이스등 정보통신 매체에 소재로 선택 수록해서는 아니된다.

이와같은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에 대한 판단기준은 누구나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금방 식별할 수 있다.

덧붙임: 데이터베이스구축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앞에서 밝힌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구축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는 소재의 선택 즉, 개개의 정보를 수집하여 소재로서 데이터뱅크에 축적시킴에 있어서 판단을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선택은

있는 그대로 망라적으로 선택하고 정보의 가치는 이용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되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이나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정보의 수집단계에서 제외시키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들면, 사내의 규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관한 규정등을 마련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적성표현물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정보의 실질적인 가치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정보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정보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유용성 내지는 중요성의 정도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이적표현물이나 또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보통수준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축적이전의 단계에 관계당국에 문의할 필요도 있다.

헌법상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전기통신관계법이나 전산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정보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취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온정보가 유통되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직당국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업운영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는 정보의 수집단계에서 불온정보의 유통이 차단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DB**